

제268회 임시회 2008. 3.6

검 토 보 고 서

•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**출**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8년 2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08년 2월 25일

3. 제안 이유

○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 록 하기 위하여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,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 대료 부과기준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내용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 내용

-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'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 실시' 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감사 실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 (안 제2조제2항)
-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. (안 제8조의2)
-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을 위한 근거 마련. (안 제8조의3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안의 개정 이유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」 부칙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써,
-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10월 정기 회기내 실시하던 것을 9월 임시회에 실시하여 감사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사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며, 「지방자치 법」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안을 정비 하려는 것임.

나.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에 대해

- 현행 교육청 조례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 조례안에서는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관계법령에 의하면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16조는 자치단체의 사무감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 회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시행령」제14조에는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을 준용 하고있음.
- 그러나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4조에는 「지방자지법 시행령」제1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는바, 동 조례안의 감사실시 시기를 정기회에서 임시회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, 동 조례안의 감사시기를 정기회에서 임시회로 조정하는 것은 그동안 정례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10월

정기회 예산안 심사시 적정히 반영하기 위함이며, 타 시.도 교육위원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점차 정례 회에서 임시회기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추세에 있음으로, 동 조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		
NOOMTON NA DU BENE		
□ 시.도 교육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		
시도별	정례회기 실시	임시회기 실시
서 울	· 2차 정례회 전에 5일이내	_
전남,경남	· 1차 정례회 기간중 5일이내	· 전남,경남 6월(1차정례회)
경북,광주, 울산,충남	· 정례회 기간중 5일이내	_
충북,경기, 부산,대구,대전	· 정기회 기간중 5일이내	_
전북,강원	_	· 6월 임시회 기간중 5일이내
인 천	_	· 정기회 직전의 임시회시

□ 관계법령

- o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법 제36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.<개정 1994.7.6, 1999.12.31, 2000.7.1>
- o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준용 <개정 2005.3.31>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 내지 제15조의5, 제17조의2, 제17조의4 내지 제19조, 제19조의3, 제20조 내지 제25조 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감사 또는 조사위원 회"는 "소위원회"로, "지방의회" 또는 "본회의"는 "교육위원회"로, "의 원"은 "위원"으로. "지방자치단체의장"은 "교육감"으로. "행정자치부장 관"은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본다. <개정 1992.3.25, 2000.2.28, 2001.1.29, 2005.3.31, 2006.2.8>

※ 정례회 : 1차(6월), 2차(10월)

다.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실비변상에 대해

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임.

<타 시도 교육위원회 사례>

- 15개 시·도교육위원회(제주특별자치도 제외) 중
 - 서울시교육위원회와 전남도교육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붙임: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